

# 심리적 측면에서 반려동물을 통한 노인의 재난 취약성 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양 수 연\*\*

이 달 별\*\*\*

## 국문요약

이 연구는 노인의 재난 취약성에 관한 연구와 반려동물의 심리적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난 시 노인의 심리적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정신적·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대피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를 위해 먼저, 심리학 분야에서의 반려동물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대피소 등의 시설 이용 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의 취약성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밝힌다. 미국, 일본 등 국외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조사·분석하여 국내 재난 관련 법률과 행정안전부의 국민재난안전포털 상의 반려동물 재난대처법에서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재난 시 노인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심리적 지지체계인 반려동물의 대피소 출입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 또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행 법률 및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법률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제어: 반려동물, 노인, 심리적 취약성, 완화, 동행 대피

## I. 서론

현재 우리 사회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학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고령자 가구의 비중은 2020년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1인 가구는 3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22).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재난의 발생도 다양화·복잡화되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 이 논문은 행정안전부의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제1저자

\*\*\* 교신저자

동일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며, 자연환경과 인위적 환경의 취약성과 결합되어 특정 취약 계층에게 집중되어 발생한다(김진선, 정지혜, 2018). 특히 재난 상황에서 노인은 안전취약계층<sup>1)</sup>으로 분류되고 있을 정도로 재난에 취약하다. 노인의 90% 이상은 만성질환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으며, 인지 기능 저하도 경험하고 있어 재난 상황에서 노인의 의존성 및 취약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조명선, 2019). 노인은 신체적, 인지적, 기능손상으로 인해 재난 시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최경식, 2016) 이들을 위한 적절한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은 재난상황에서 불안감, 혼란 등과 같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김진선, 정지혜, 2018). 재난 이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재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며, 재난 후에 상황에 따라 만성화의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송영지, 최송식, 2020). 노인은 재난 시 다양한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며, 재난으로부터의 피해를 회복하는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정서적·심리적 위협에 노출되어 일상으로의 복구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 독거노인의 경우 신체적·환경적 취약성과 더불어 재난 취약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정지혜 외, 2019). 이러한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sup>2)</sup> 발간, 인구주택총조사(2020)에서의 반려동물 항목 조사 최초 실시 등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해 정책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반려동물이 노인에게 정서적인 위안 및 신체적 건강 증진은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반려동물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이경미 외, 2022).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상황에서의 대피소 이용 시 봉사용 동물을 제외한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sup>3)</sup> 등 재난 시 노인의 정신적 불안 및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효과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관련 연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재난 등 위험상황에서 반려동물을 통한 노인의 심리적·정서적 완화 효과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대피계획 수립 시 대상별 특수 상황 및 수요에 따른 특별한 배려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임현우, 유지선, 2022).

따라서 이 연구는 노인의 재난 취약성에 관한 재난학적 연구와 반려동물의 심리적 영향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를 통합하는 재난심리학적 관점에서, 재난 시 노인의 심리적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반려동물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완화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려동물의 대피소 출입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재난 시 노인의 취약성과 노인과 반려동물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9의3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2) KB금융지주 경영연구. 2021.03.21. ‘2021년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3)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우리집안전점검. 「애완(반려)동물대처방법」

의 정신적 지지체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반려동물과 인간의 대피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는 미국과 일본의 반려동물과의 동반 대피 규정을 살펴본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 및 가이드라인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자료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현행 체계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1. 노인의 재난 취약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4)에서는 노인을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이라 정의하며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한다. 노인의 재난취약성 관련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Thompson 외(2014)는 노인은 신체적인 이동성 및 인지적 능력이 저하되고 감각 인식이 감소하며, 사회적 및 경제적 제한이 생겨 위기 상황에서 동요하거나 대피소의 혼잡, 소음, 프라이버시 부족에 압도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노인은 활동 능력이 감소하기 시작하며(김도형 외, 2017), 취약한 집단의 특성과 결합하여 재난 상황에서 더 큰 불안감, 혼란 등의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진선, 정지혜, 2018). 송영지, 최송식(2020)은 재난 피해를 겪은 노인이 단순히 한 가지 어려움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각 개인의 심리적인 피해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과 같은 재난 취약계층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재난 심리 회복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최형윤, 2018).

송영지, 최송식(2020)은 노인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재난 이후 사회적응 정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통계청의 사회조사(2021)에 따르면, 전체 고령자 10명 중 4명(38.4%)이 자신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느끼는 반면, 독거노인의 경우 10명 중 5명(49.5%)이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느낀다고 한다. 노인 중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해 더욱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 후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재난 발생으로 집을 떠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인 대피소에서의 생활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노인의 재난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송영지, 최송식, 2020). 주택 파손이나 생활기반의 상실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물리적 상황 변화는 심리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며, 가족이나 이웃 등 친밀한 사람의 상실은 기존의 생활 방식을 파괴하여 불안과 우울감을 증가시켜 PTSD 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조명선, 2019). 실제 대피소에서 재난약자는 심리적·정서적 충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었고, 설문조사 결과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대피소에서 장시간 생활을 지속하게 될 경우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미경, 김은정, 2016). 재난 발생 후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복구의 과정에서 장애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인의 정신적 안정감 제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2. 반려동물이 노인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정서적 효과는 학계에서 찬반이 나뉘고 있다. 한아람(2017)은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 등이 높을수록 성인의 삶의 질과 정(+)의 관계가 발생하며,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제공받은 안정감은 개인에게 정신적·심리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증진을 통해 사회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통해 보호자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한다(김명희, 천성문, 2022)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인간에 미치는 심리적 건강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며, 반려동물 소유와 심리적·정신적 건강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성이 있지 않다는 연구도 존재한다(김세영, 박형인, 2018). 다수의 연구에서는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도 일부 보고되기도 한다(이종화, 손영은, 2022).

그러나 노인(독거노인)의 경우 반려동물이 정서적으로 정(+)의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이다. 노인은 개인화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소외 현상을 몸소 느끼는 집단 중 하나이다. 특히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 외로움과 고립을 더욱 강하게 느끼며, 이러한 정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황초희, 김영주, 2022). 이처럼 이들의 자존감 제고와 우울감 감소를 위해서는 정서적인 지지와 외로움을 줄일 수 있는 상호 소통적인 관계가 필요하며, 대안으로 반려동물을 제시할 수 있다(문영희, 김효정, 2011). 김석은(2020)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노인의 자존감 향상과 우울감 감소, 상호 소통 등이 가능하여 사회·정서적 지지에 효과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문영희, 김효정(2011)의 연구에서 노인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동시에 정신적 지지의 역할을 수행하여, 우울증 감소시키고 신체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한다. 국내외 많은 연구를 통해 반려동물이 노인에게 정서적 위안을 주는 효과가 있으며 사람 사이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등의 다양한 반려동물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이경미 외, 2022). 서울시 복지관의 총 5명의 고령자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한 결과, 모두 반려동물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생각하며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낙”이라고 표현하였다(이경미 외, 2022). 현대 사회의 가족형태 변화를 통해 반려동물을 가족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독거노인의 경우 하나뿐인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며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반려동물은 노인에게 삶의 흥미를 유발하며, 서로의 유대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주고 외로움을 잊게 돕는 위안처가 된다(김석은, 2020). 사회활동 및 관계 축소를 경험하는 노인의 경우, 반려동물이 중요한 정서적·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김세영, 박형인, 2018). 반려동물

은 사람과의 분위기를 가족적으로 만들고 유대관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노인들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김석은, 2020).

독거노인은 여러 측면에서 비(非) 독거노인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독거노인은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더 높고,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이중화, 손영은, 2022). 이국희(2019)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집단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단의 심리적 안정감이 키우지 않는 집단보다 높았다고 한다. 나아가 반려인에게 반려동물은 가족과 동일하며 삶의 동반자 및 무조건적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진다(모효정, 2015). 사회적 및 정서적으로 고립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가족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반려동물이 수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서적·심리적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다.

다수의 반려동물과 노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에서 반려동물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준다. 동물과의 애착은 생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데 동기를 부여한다(Thompson, 2014). 국립축산과학원<sup>5)</sup> 또한 반려동물과의 상호반응은 자아 존중감 향상과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감 등을 감소시키는 등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과들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재난의 전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위협에 놓여있는 노인의 취약성과 연결하여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형태의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기에 반려동물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 3. 노인의 재난 취약성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의 심리적 효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재난과 노인, 반려동물과 노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노인의 경우, 재난 상황에서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모든 부분에서 취약성이 극대화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 독거노인의 관계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 정서적 완화의 효과까지 발견할 수 있다. Thompson 외(2014)는 동물에 대한 애착이 생존을 돕고 재난 상황을 회복하는데 동기를 부여한다고 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은 반려동물을 통해 보다 큰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의 경우 반려동물 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이다.

동물의 손실은 심각한 슬픔 및 심리적 트라우마를 발생시키며, 비극적인 사건 등 재난과 더불어 동물을 잃는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영향은 가히 압도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Thompson 외, 2014). 현재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제공하는 반려(애완)동물 대처방법에 따르면 봉사용 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대피소 출입을 금하고 있다. 이 경우 재난 발생 시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가족으로 여겨지는 반려동물과 물리적·정신적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중했던 반려동물과 강제적으로 이별을 하는 경우에 큰 비통함이 발생한다고 한다(모효정, 2015). 이는 2차적 스트레스로 다가가 건강 손실 및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송영지 외, 2020). 즉, 노인의 경우 재난상황에서 정신적·신체적 모든 부분의 취약성이 극대화되는 것과 더불어 반려동물의 상실까지 더해진다면, 2차

5)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람과 동물과의 유대」.

피해로 복구가 더디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복구과정에서 노인계층이 겪는 피해는 막대해질 것이다.

이용숙(2017)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명 중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47.8%로 가장 높았고 '친구 같은 가족'이자 '가족 같은 친구'로 가정에서 여겨지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가족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지낸 반려동물이 죽거나 사라진 후에 발생하는 고통 및 슬픔, 그로 인해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이 발생할 수도 있다(모효정, 2015). 노인의 경우 재난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사회적 모든 부분에서 취약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즉각적이고 신속한 의료 개입이 요구된다(송영지 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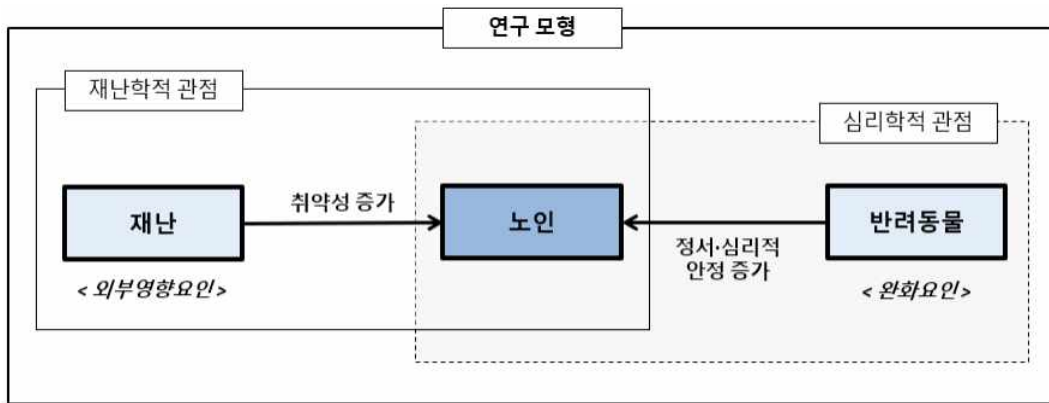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서울시 대피시설 실태와 개선방안(2021)'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대피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이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나아가 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9%가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Hesterberg 외(2012)에서의 설문조사 결과, 최대 25%가 애완(반려)동물로 인해 대피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다수의 반려인은 재해가 발생하면 자신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몇 분 동안 대피하라는 경고를 받더라도, 동물을 데리고 갈 것이라 말했다. 이것은 신속한 대피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계획에 동물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Hesterberg 외, 2012). 사전에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계획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대피과정 속 혼란이 심화되어 더욱 큰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 특히 신체적 불편함 및 신속한 정보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현재와 같이 매뉴얼의 부재 상황은 재난상황에서 발생하는 위험 등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 노인의 재난 취약성을 감안할 때, 심리적 유대감이 높은 반려동물과의 강제 이별 시 심리적 취약성은 심화될 것이다. 노인의 경우에는 반려동물과 동행(同行) 대피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 구축을 이루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대피 여부 의사결정과 대피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영향력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Taylor, 2015). 사람들이 동물을 구하도록 돕는 것은 재난 계획 및 생존뿐만 아니라 재난 후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의 복구 및 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Thompson, 2014). 반려동물의 대피계획을 세우는 것은 국민의 사적인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행위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복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반려동물과의 동행 대피는 재난으로 발생하는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 및 불안에 대해 완화 작용을 하여 재난으로부터 빠른 복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재난 피해자들의 고통 극복에 큰 도움이 되며(Tanaka, 2019), 사람에게 긍정적 정신적·신체적 영향을 준다. 특히 재난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노인, 그중에서 더욱 취약성이 가중되는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하나뿐인 가족으로서 정서적 작용을 하여, 낯선 대피소에서의 적응 등 재난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불편함에서 도우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재난 상황에서 노인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이 노인에게 미치는 정서적·심리적 긍정 영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재난·심리

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본 관점은 재난이 외부영향으로 노인에게 발생했을 때 노인이 겪을 취약성을 반려동물이 완화요소로서 작용하여 심리적 안정감의 증대를 이끌어내 재난 상황에서 겪을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험상황에서 노인은 일반인에 비해 다양한 측면에서 높은 취약성을 보이는데 이때 반려동물의 정서적 효과는 노인이 재난 시에 받게 되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해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법령 및 정책의 미비한 점을 파악하고 국외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개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재난·심리학적 관점



### Ⅲ. 국내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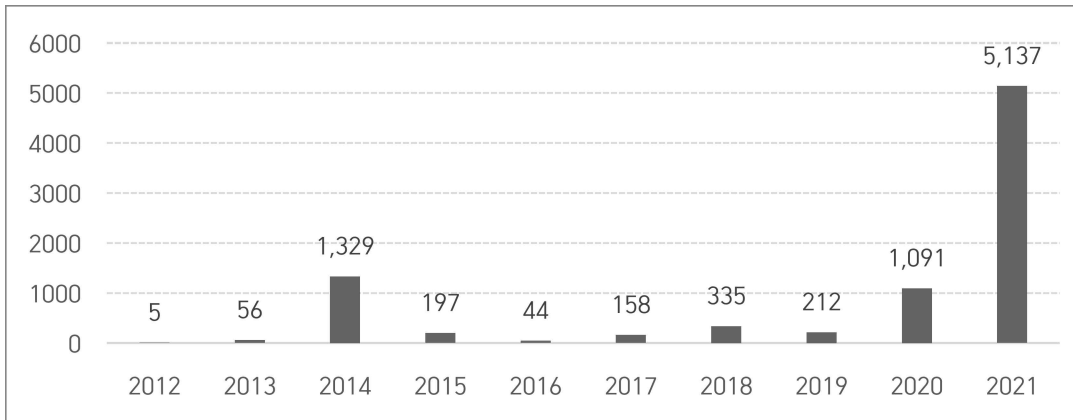
#### 1. 국내 관련 현황

기상청에서 발간한 이상기후 보고서(2022)<sup>6)</sup>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매해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기상변화로 인해 증가·발생할 재난 등에 대해 취약성이 높은 계층을 위한 실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재난(〈그림 2〉 참고) 및 자연재난(〈그림 3〉 참고)의 최근 10년간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재난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급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자연재난은 2018년에서 2021년까지 평균적으로 82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기후위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와 같은 신종 및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인명 피해의 위험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재난 예측 및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6) 이상기후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 필요로 국무조정실·기상청이 주관하여 범부처 연합으로 2010년 이후 매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림 2〉 사회재난 인명피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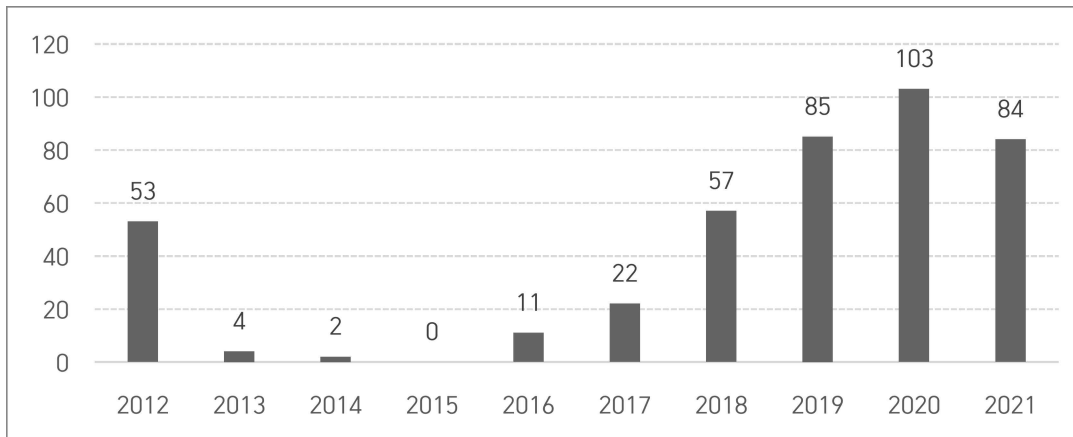
(단위: 명)



\* 출처: 재난연감(2021)

〈그림 3〉 자연재난 인명피해 현황

(단위: 명)



\* 출처: 재해연보(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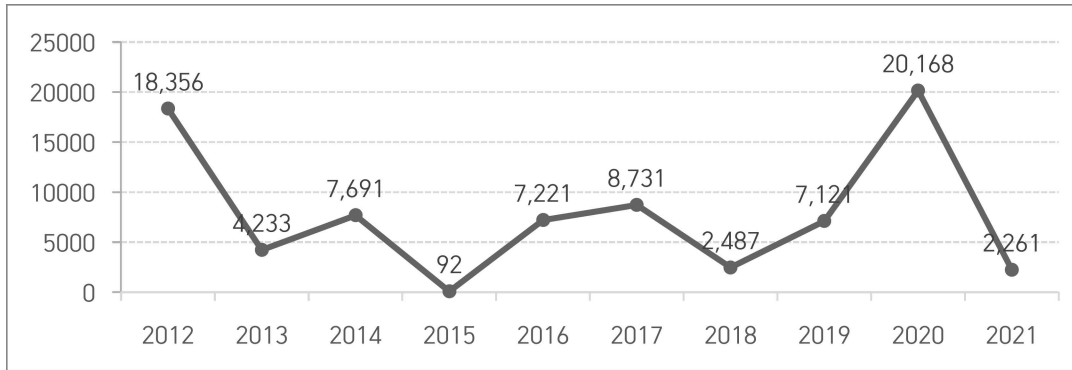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이재민 수도 증가하고 있다. 재해연보(2021)<sup>7)</sup>에 따르면(〈그림 4〉 참조) 이재민 발생이 2018년에 감소했다가 2020년 급증하였다. 재난으로 발생하는 이재민의 수는 예측이 어려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피 공간 마련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혼란스러운 재난상황 속에서 재난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의 경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일반인에 비해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대피소 구축이 필요하다.

7) 재해연보. 행정안전부 (2021)



〈그림 4〉 자연재해 이재민 발생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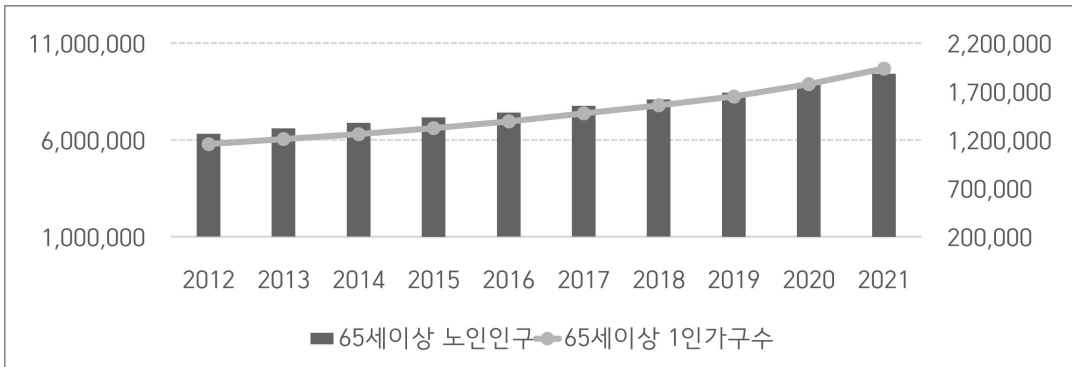
\* 출처: 재해연보(2021)

현재 우리나라의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sup>8)</sup> 앞으로 반려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을 보인다. 재난을 통해 반려동물을 잃게 되면 막대한 심리적 외상을 입으며, 집을 잃은 수준의 정신 병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Hunt 외, 2012). 국가적 차원에서의 늘어나는 반려 가구 및 노인계층의 재난 시 심리적·정서적 피해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 제도적 측면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저출산, 의학의 발달 등으로 인해 고령화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림 5〉를 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노인인구 및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더불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자 통계(2022)’를 보면, 고령화 사회를 넘어 전남, 경북, 전북, 강원, 부산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인구의 비율은 전체에 17.4%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령별 고령인구 비중 중 75세 이상이 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5〉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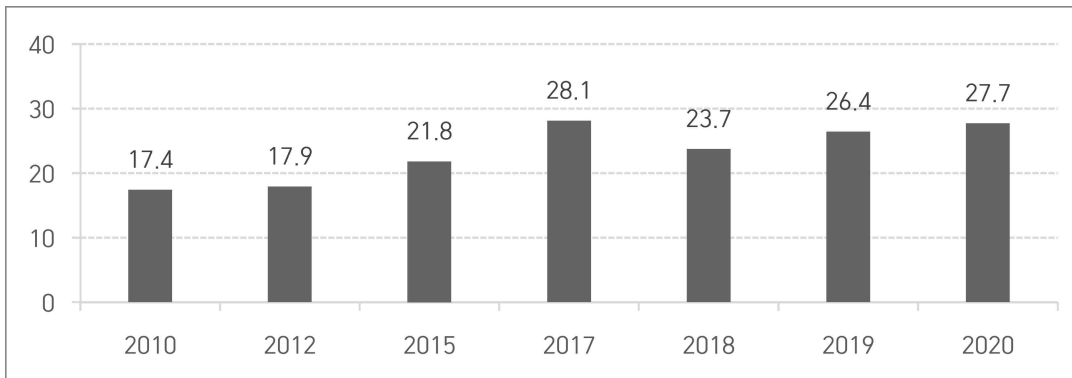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2021)

8) 부산일보. 2022.03.16. ‘생존 키트’ 미리 준비하고 ‘켄넬 훈련’은 필수...반려동물 재난 대처법.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31619032625699>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해 반려동물의 수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며 양육가구의 수는 2015년도 457만 가구에서, 2020년 기준 638만 가구로 늘어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1).<sup>9)</sup> 반려동물의 양육 비율(〈그림 6〉 참조)도 2015년 20%를 넘어섰으며, 2018년도를 기준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6〉 반려동물 양육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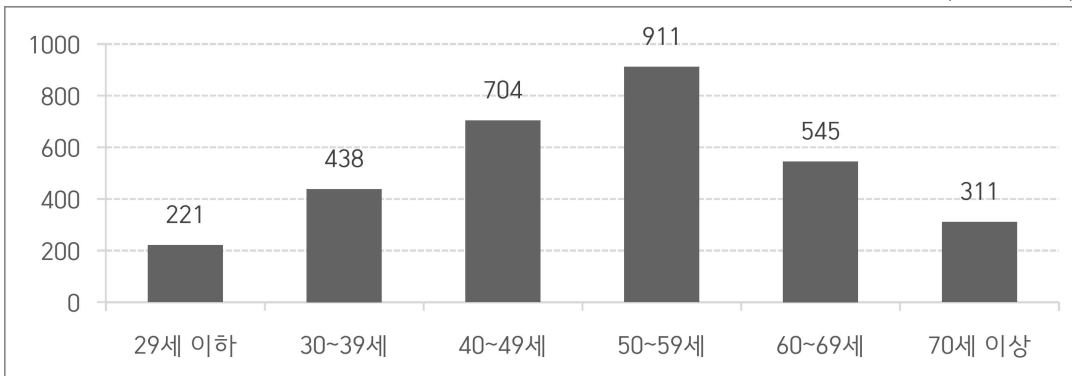


\* 출처: 농림축산부(2020)

반려동물 가구주의 연령을 살펴보았을 때(〈그림 7〉 참조) 50~59세의 비율이 18.9%로 가장 높았으며,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은 24.2%로 나타났다(인구주택총조사, 2020). 이는 앞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중 고령인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7〉 연령별 반려동물 가구

(단위: 천 가구)



\* 출처: 통계청(2020)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동물은 단순히 애완동물이나 사육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적인 관계로까

9) 농림축산식품부. (2021). “전국 638만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마리 키운다”.

지 인식되며 애완동물이라는 인식보다는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같은 존재로서의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문영희 외, 2011). 나아가 'Pet'과 'Family'를 합쳐 탄생한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반려동물은 민법 제98조<sup>10)</sup>에서 정의하는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이 아니라 '제 3의 지위'<sup>11)</sup>를 부여해야 하는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대국민 전반의 인식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증가하는 노인 가구 및 반려동물 가구를 반영하지 못한 재난 대피계획은 위험 상황에서 이들 계층을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재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가구에 반려동물의 대피계획을 오롯이 맡긴다면 재난상황에서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피계획 수립 마련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복구의 시간을 단축하는데 큰 도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 2. 국내 반려동물 관련 가이드라인 및 법률

노인은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인해 대피소의 생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피소 이용 시, 재난 이후 주거공간 및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2차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송영지 외, 2020). 일반 대피소의 환경은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잃기 쉬우며, 재난취약계층의 대피소 생활은 보다 가혹할 것으로 여겨진다(임동균, 2019). 재난 상황에서 대피소 및 임시주택에서의 생활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며(Tanaka, 2019), 정신건강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재난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을 배려한 특별한 시설 마련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포항 지진 이후 반려동물과 관련한 재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으며, 재난상황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김도희 외, 2020). 2023년 서울시 전역에 경계경보를 알린 위급 재난문자 상황 때도 반려동물의 대피 문제는 골머리를 앓았다.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서울 내 반려동물과 동행이 가능한 대피시설은 현재 한 곳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sup>12)</sup>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하는 보편적인 요소는 반려동물의 대피 실패이다(Heath, 2001). 대피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무질서한 체계는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켜 위협에 노출시킬 것이다.

앞선 재난을 통해 수많은 동물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면서 국민의 안전관리 의식은 높아졌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은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반려동물 관련 현행 가이드라인을 살펴본 결과, 국내에는 동물과 관련한 재난 대처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

10)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에서 '물건'이란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한다.

11) KBS 뉴스. 2021.05.19. 개·고양이가 물건이라고요?...“제3의 지위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9063>

12) 쿠키뉴스. 2023.06.03. 재난문자에 “우리 고양이는요?”... 서울 내 반려동물 대피시설 ‘0개’.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6010222>

다. 나아가 구체적인 지침이나 대피요령 등도 부재한 실정이다(성한빛, 2021).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제시하는 '반려동물 대처 방법'<sup>13)</sup>은 재난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의 허울뿐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매뉴얼 및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 보호자는 재난이라는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실정이다. 2023년 4월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9조<sup>14)</sup>에서 '소유자 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재난 시 동행 대피를 위해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도 및 지원들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현실성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국내의 경우, 반려동물의 동행 대피가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난을 겪고 있는 당사자 또는 민간 동물단체의 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재해구호법 제3조<sup>15)</sup>에서 구호의 대상을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피난 및 구호의 책임은 오롯이 반려인에게 귀속되고 있다. 나아가 재해구호법 제4조의2<sup>16)</sup>에 의하면 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대상을 사람(이재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출입과 관련하여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13)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반려동물 대처 방법」, 애완동물 소유자들은 가족 재난계획에 애완동물 항목을 포함시키십시오.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봉사용 동물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대피할 경우를 대비해 애완동물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지역 외부에 거주하는 친구나 친척들에게 비상시 자신과 애완동물이 머물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또한 재난으로 인해 자신이 귀가하지 못할 경우, 애완동물을 돌봐달라고 이웃이나 친구, 가족에게 부탁하십시오. 비상상태 기간 동안 담당 수의사나 조련사가 동물을 위한 대피소를 제공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재난기간에는 애완동물을 운반용기에 넣어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애완동물에게 보다 안정감을 주고 안심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애완동물이 숨는 장소를 알아두면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재난기간에 애완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대피소로 보내는 경우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세요.

- 물, 사료와 운반용기 / 목줄, 입마개 / 최근 접종한 모든 백신과 건강 기록 / 애완동물을 위한 약품(필요한 경우) / 애완동물 운반용기나 우리(화학 운반기에 바퀴를 달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 오물 수거용 비닐 봉지 / 애완동물의 사진

14) 동물보호법 제9조 적절한 사육·관리에서는 소유자들은 재난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한다.

15) 재해구호법 제3조에서는 구호의 대상을 이재민, 일시대피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고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6) 재해구호법 제4조의 2에서는 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에 대해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 IV. 국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1. 사례 분석

#### 1) 미국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뉴올리언스 시의 80%가 침수되어 가옥 10만 채가 파손되는 등 1천억 달러의 피해액이 발생한 재난을 겪었다.<sup>17)</sup> 태풍 카트리나 사고 당시, 위험을 감수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남아 있을 것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들이 다수 발생했다. 많은 반려인들이 위험을 감수한 채 대피소에 들어가지 않고 반려동물과 남는 선택을 하였으며, 6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주인은 잃고 떠돌아다녔고 사망자 중 1,800명은 반려동물을 두고 대피할 수 없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성한빛, 2021). 이후 미국은 재난 시 반려동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다수의 인명피해 원인으로 반려동물을 구조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이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sup>18)</sup>

미국은 2006년 「반려동물 안전을 위한 반려동물의 대피와 운송기준에 관한 법」(Pets Evacuation and Transportation Standards Act, PETS Act)을 제정하였다. 개정된 스탠포드법에서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국장은 주 및 지역 비상 대비 운영계획에 반려(애완)동물 및 도우미 동물에 관하여 비상 대피소 시설 및 자재의 조달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나아가 필수적인 지원사항으로 반려(애완)동물의 구조, 돌봄, 쉼터 및 필수 요구 사항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대피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피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뉴욕시 반려(애완)동물 비상대책<sup>19)</sup>에서는 12가지의 언어가 갖추어진 워크북을 제시하며 반려(애완)동물을 시의 모든 대피센터에 동행할 수 있도록 문서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미국 국토 안보부(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운영하는 Ready.gov<sup>20)</sup>에서는 재난 시 반려동물을 위한 계획, 키트, 대형동물에 대한 도움말 등 대비와 관련된 내용을 11개국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 동물 애호 협회(ASPCA)<sup>21)</sup>는 보호자와 반려(애완)동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대비임을 강조하며 말, 새, 파충류, 소동물의 대피 계획까지 세세하게 기재하고 있다. 미국의 대피와 관련한 지침으로 2009년 FEMA에서 발간한 ‘이재민 지원 계획 지침(Evacuee Support Planning Guide)에서는 반려(애완)동물의 대피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통해 (허보영, 박상현,

17) 연합뉴스. 2015.08.24. “허리케인 카트리나 악몽 10년…갈 길 먼 미 뉴올리언스”. <https://www.yna.co.kr/view/AKR20150824001400123>

18) 안전정보. 2023.05.29. [재난안전칼럼] 사람과 반려동물. <http://www.safety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50>

19) 비상 대책 애완동물 Ready New York..(2022).

20) NTAS Ready.gov 반려동물을 위한 재난 대비.

21) ASPCA 반려동물 재해 대비.

2016) 재난 시 반려동물의 대피가 사람들의 복구에 큰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도 재난 시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과 정책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순 없다. 나아가 미국의 비상대책 등 가이드라인의 세부사항을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에 비해 반려동물의 권리의식이 아직 미흡하며, 비교적 최근 들어 반려동물과의 대피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민 및 정책결정자의 인식변화 및 교육을 통해 서서히 변화하여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의 사례 분석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겪으며 얻은 교훈을 통하여 반려동물의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 및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반려동물의 재난 대피 등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시·군·구 단위의 계획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상위 법률의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상위 법률을 통해 기반을 다진 후, 하위 법률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법 및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2) 일본

일본은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반려동물 재난 대책 가이드라인’<sup>22)</sup>을 만들어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의 동행 대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반 대피소도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sup>23)</sup> ‘반려동물 재난 대책 가이드라인’에서는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 방안에 대해 선제적 조치, 재난 발생, 대피, 대피소에서의 생활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 제시하며, 사전 훈련을 통해 재난에서의 혼돈을 줄일 수 있게끔 하였다.<sup>24)</sup> 나아가 2018년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 대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발표하였으며, 2020년 재난 대비 지침으로 ‘인간과 반려(애완)동물 자원봉사 활동 및 규범’을 추가 발행하며 재난상황에서의 반려동물의 보호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재난 대비 지침으로 발간한 ‘인간과 반려(애완) 동물 자원봉사 활동 및 규범’에서는 자원봉사 활동 및 자원봉사자의 규범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전에 발생한 재난을 통해 민간 봉사자와 유관기관 간의 정보교류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규모 재난 시 바람직한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반려인의 방재의식 향상과 대비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이외에 민간의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지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017년에 시즈오카현 건강복지부에서 발표한 ‘피난처의 반려(애완)동물 교육 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동행 대피를 위한 공간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및 재난의 대비, 대응에 따른 반려인의 행동규범, 훈련까지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재난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22) 일본 환경성. 「반려동물 재난 대책 가이드라인」. (2013).

23) 인사이트. 2023.05.31. “차라리 같이 죽을래”...반려동물 집사들 가슴 아프게 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 <https://www.insight.co.kr/news/440191>

24) 부산일보. 2022.03.16. ‘생존 키트’ 미리 준비하고 ‘켄넬 훈련’은 필수...반려동물 재난 대처법.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31619032625699>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모의훈련을 통하여 재난 상황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여 빠른 대피를 할 수 있게끔 연습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은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반려동물과의 동행 대피를 권고하고 있다. 반려동물과의 동행 대피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은 물론이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이진홍, 2021). 나아가 동반(同伴) 대피가 아닌 동행(同行) 대피를 권장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공간을 분리하여 대피소 내 위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반려동물 선호 등 불필요한 분쟁을 막아 비(非) 반려인의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일본의 재난대비는 자조(自助)를 기본 원칙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주로 반려인이 반려동물 보호를 책임지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재난 상황에서 국가와 반려인의 역할을 확실히 구분하여, 사적으로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법 제도를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최준호 외, 2023).

나아가 고령자 및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대피소<sup>25)</sup>를 운영하며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을 지정하여 사전에 시설직원 확보 및 배치를 하고 있다(허보영, 박상현, 2016). 재난 취약계층이 재난상황에서 겪을 취약성을 이해하며, 특정 집단을 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그들의 어려움을 국가 차원에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2. 시사점

미국과 일본의 차례처럼 상위법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실정에 맞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조직의 봉사활동 방법, 기간, 체계 등을 제시하여 재난 상황 시 혼돈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민간의 협력체계를 사전에 견고히 하여 위급상황에서 유용하게 조직을 활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재난상황에서 반려동물의 구조·구급의 전반을 민간 시민단체의 도움에 의존하며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 대피와 관련하여 일본 시민단체의 체계 및 운영 방법이 적힌 가이드라인을 한국에 맞게 변형하여 시스템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의 활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원·공조하여 관리한다면 재난 시 반려동물의 대피가 보다 효율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불안과 위험이 공존하는 위기상황에서 국민 개인이 반려동물 보호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것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재난의 전 영역을 오롯이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민간과 협력에 대한 사항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체계화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 반려동물의 대피와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하자면 <표 1>과 같다.

25) '복지 대피소'란 재난 시 일반 대피소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재난약자의 피난처로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병약자 등 대피소 생활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드시 요구하는 사람들로 개호시설, 의료기관 등에 입소,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재난약자를 일시적으로 시설·설비 전문 인력이 포함된 인력이 갖추어진 시설 등에 피난시키는 제도이다(임동균, (2019)).

〈표 1〉 국내·외 반려동물 대피 법 및 가이드라인 분석

	미국(뉴욕)	일본	한국
반려동물 대피법 및 가이드라인 여부	○ 반려동물 안전을 위한 반려동물의 대피와 운송기준에 관한 법(Pets Evacuation and Transportation Standards Act, PETS Act)을 제정함	○ 반려동물 재난 대책 가이드라인(2011) 및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 대책 가이드라인(2018)을 구축하여 운영함	△ 반려동물을 위한 재난 대책법(행정안전부)이 존재하나, 구체적인 대피 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동행대피 여부	○ 대부분의 주에서 반려동물과의 동행대피를 권고하고 있음(뉴욕시의 경우 모든 대피센터에 반려동물의 출입이 가능함)	○ 반려동물 재난대책 가이드라인(2011)을 통하여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의 동행 대피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동반 대피소의 수도 점차 늘리고 있음)	X 봉사용 동물만 입장을 허가하고 있음
동행대피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 마련 유무	○ FEMA국장은 반려(애완)동물에 관하여 비상 대피소 시설 및 자재의 조달 등에 대한 재정적 기부를 하게 권한이 부여됨. 나아가 필수적인 지원사항으로 반려(애완)동물의 구호, 돌봄, 쉼터 및 필수 요구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	△ 지원 물자에 대해서는 피난소마다 다르나 요코하마시, 시즈오카현 등 지역 가이드라인(매뉴얼)에 따르면 대피소 내 반려동물의 일시 거주 공간 확보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X 동행대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적·물적 기반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음

## V. 개정방안

현재 반려인의 재량적 행동이 반려동물 재난 대피에 전반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람에게는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최준호 외, 2023). 나아가 대피소 출입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적 합의와 명확한 규정 조항이 필요하다. 이는 국민 개인이 할 수 없으며 국가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반려동물과 사람의 동행과 관련한 재난 시 대피계획을 구체화하여,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클 노인의 심리적·정서적 완화를 도와야 할 것이다.

대피 단계에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피소 운영부터 폐쇄까지의 자세한 내용을 플로어 차트로 제공하여 참고할 수 있게 돕는다면(허보영, 박상현, 2016), 재난상황에서의 혼란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재난은 모든 계층에게 평등하게 작용하지 않고 특정 집단에게 보다 더 가혹하게 작용한다(임현우, 유지선, 2022).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대피장소 확보는 재난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sup>26)</sup>에서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통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취약성을 배려한 공간은 현

2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서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사항에서 8항 2호에서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작성해야 한다고 한다.



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복지 대피소와 같이 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된 특별한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해구호법 제3조의 구호의 대상에 대해 반려동물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재해구호법 제6조<sup>27)</sup>를 통하여 반려동물 대피를 위한 물품 등에 대한 물자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려동물 대피장소를 위해 필요한 물품·장비 등에 대해 물자를 확보해야 함을 추가 신설하고, 임시 대피소 내 반려동물 보호 장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에 대한 규정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인력과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와의 협력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해결해 나갈 수도 있다. 해외의 사례처럼 재난 시 반려동물과 사람과의 대피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및 법 등에 대해 새로이 신설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이진홍, 2021).

반려동물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것은 대피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행위와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지역의 공무원들이 반려동물의 수와 종, 반려동물 소유의 지리적 분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대피소의 계획 및 건설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Edmonds, 2008). 시·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려동물 개체수 파악을 시·군·구 단위로 확장하여 구체적인 자료 데이터를 확보하여 대피소 구축에 기초자료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재난 시 반려동물의 보호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려인이 책임져야 할 측면이 다수 존재한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배포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이동장 훈련, 재난 키트 마련 등 사전에 재난 상황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 위험을 대비를 해야 한다. 노인의 경우 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문이 잦은 행정복지센터 및 반사회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도우미로 지정되어 있는 노인돌보미,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의 체제를 활용하여 정보 전달의 효과를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과의 대피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 차량에 대피를 하는 등의 차내 대피의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대피소에서 반려동물을 허용하지 않아 차 안에 머물렀다고 보고하는 사람이 다수 존재하였다(Taylor 외, 2015). 차내 대피의 경우, 재난과 더불어 각종 위험에 반려인을 방치할 수 있다. 자동차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생활하게 되면 이코노미 클래스,<sup>28)</sup> 열사병 등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 법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하여 반려동물 출입 허용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각종 대피 문제들도 더불어 해결될 것이다. <표 2>는 이러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보완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27) 재해구호법 제6조에서는 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8)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이란 좁고 불편한 비행기의 일반석(이코노미클래스)에서 장시간 비행하면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 다리가 붓고 저려 오며, 이것이 오래되면 혈액응고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신종 증후군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표 2〉 기존 법령 개정 및 보완을 위한 제안

법령	기존법률	개정 및 보완 사항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 취약계층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노인의 재난 취약성을 배려한 공간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된 특별한 대피소와 관련한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마련 시급
재해 구호법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호의 대상을 반려동물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제4조의 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5.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이재민 등으로 한정되어있는 임시주거시설의 사용자를 반려동물을 포함할 수 있게 개정 필요
	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① 시·도지사등은 지역별 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호에 필요한 조직·인력을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의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구호활동을 할 때 재해구호물자등이 부족하면 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설치·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등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반려동물 대피를 위한 물품 등에 대한 물자를 확보할 필요 존재. 대피소 내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필요한 인력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 효과에 따른 노인의 정신적·심리적 완화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 및 가이드라인 제정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필요한 정책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고령인구 증가 및 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의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이들을 언급하며 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 반려동물과 관련한 권리의식까지 더불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주된 재난 복구의 패러다임은 물적·인적 자원 지원에 치중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나아가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집단의 특성에 대한 배려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을 위한 대피시설의 미비는 재난 상황에서 취약성을 극대화시킨다. 재난 시 피해 등 위험성이 증대되는 안전취약계층의 취약성을 배려한 대피소 마련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VI. 결론

미국과 일본의 재난 시 반려동물 관련 법 및 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의 대피와 관련한 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현행 법 및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기존 체계 변화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의 노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감 추구를 위한 반려동물의 대피소 동행대피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재난상황에서 반려동물과 사람 간의 동행대피 체계 구축을 위해 법 및 가이드라인 제정을 입안하고자 국내·외 사례 및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알맞은 실효성 높은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재난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은 앞으로 사회적 현상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의 특성과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요구된다. 대피소의 동행 대피를 위해서는 법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Pets Act와 같이 상위법 제정을 통해 하위법 제정을 이끌어 사전에 반려동물과 동행 대피를 위해 필요한 물자와 인력 등을 충원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일본의 반려동물 재난 대책 가이드라인과 같이 반려인 및 국가의 행동 매뉴얼을 사전에 규정하여 재난 시 혼란을 방지하고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동행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의 확보는 재난의 전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가족처럼 여겨지는 반려동물과 재난이라는 심리적·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강제로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면, 재난을 극복하는데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재난 피해자들의 고통 극복에 큰 도움이 되며(Tanaka, 2019), 사람에게 긍정적인 정신적·신체적 영향을 준다.

현행 반려동물 대피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안내견과 같은 봉사용 동물을 제외한 동물의 대피소 출입은 금지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이재민의 상황을 고려한 별도의 대

피소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증가되고 있다(성한빛, 2021). 반려동물과의 동행 대피가 제한될 경우, 개인차량에 대피하는 등 차내 피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지진 당시에도 반려동물의 대피소 출입 제한으로 인해 수많은 반려인들이 차량 내에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존재하였다.<sup>29)</sup> 자동차 안과 같이 좁은 공간에 장시간 있게 되면 이코노미 클래스, 열사병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모든 측면에서 취약성이 높은 노인 집단의 경우, 재난으로 받은 피해와 더불어 발생하는 위험은 복구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체계적인 대피계획은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이는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효성있게 구축되어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 노인 재난 취약성을 고려하여 심리적 회복을 위한 재난 대피 계획이 마련된다면, 반려동물의 대피소 출입이 거부되어 발생한 피해도 더불어 해결될 것이다. 나아가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반려동물과 분리되어 발생하는 불안감과 같은 심리적·정신적 피해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과의 동행 대피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려인의 노력은 필수적이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및 이동장을 통한 훈련 등 사전에 대피소의 출입이 가능한 상태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미리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대피 키트를 꾸려놓아야 한다. 재난을 비롯한 위험상황에서 반려동물 소유자는 반려동물에 대해 주인으로서 필요한 의무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의 지위 변화로 인해 가족구성원으로 여겨지는 등 동물의 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노인 등 인간의 관점에서 반려동물의 대피를 논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동물보호법」의 목적을 기반 삼아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관리하며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이바지하는 방향도 포함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의 경우 정보 습득에 대해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홍보도 요구된다. 반려동물과 동행 대피가 가능한 대피소를 행정복지센터 등에 책자로 배치하거나 반상회를 이용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재난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실시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대피 실패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사례처럼 사전 반려동물 대피 훈련을 진행하여 노인의 신체적 취약성을 대비할 필요도 존재한다.

노인과 반려동물의 동행 대피가 가능한 대피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구별 반려동물의 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가 필요하다. 재난으로부터 주민과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힘은 도움이 필요한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인구주택총조사(2022)에서 최초로 반려동물에 대한 분석이 실시된 것을 통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반려동물 개체수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시·군·구 단위로 확장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여 대피소 확보에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 효과를 통해 발생하는 노인의 심리적·정서적 완화 작용은 개인의 복구를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게 도울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복구 비용 감소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노인의 경우 심리적 요인이 만성적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재난 시 노

29) 뉴스핌. 2017.11.25. 지진 발생하면 대피소 출입금지 반려동물, 어떻게 해야 하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71120000130>

인 및 반려동물의 대피에 대한 논의는 재난을 겪으며 점차 의식의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본 시점에서 해외의 대피 체계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재난 상황에서 노인의 취약성 완화하기 위해 심리적 지지체계인 반려동물의 대피소 출입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립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행 법률 및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법률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연구의 한계로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장기적인 데이터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 있다. 나아가 선행연구 분석만으로는 재난 피해 노인의 반려동물 효과에 대한 정서적·심리적인 부분의 심층 연구가 부족하다 판단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재난 피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재난의 복구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통해 얻게 되는 심리적·정서적 효과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기상청. (2022).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
- 김도형·라정일·변성수·이재은. (2017). 「대규모 재난 시 재난약자 지원방안」.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 김도희·권유림·김경은·송시현·채수지·최용범·한주현. (2020). 「[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8 편, 동물의 권리」.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0-0.
- 김명희·천성문. (2022).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동물보호자의 심리적 요인 관련 연구동향분석. 「재활심리연구」, 29(4), 25-36.
- 김미경·김은정. (2016). 사용자의 거주성을 고려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 분석과 계획적 시사점.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5(6), 23-31.
- 김석은. (2020). 반려동물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흥성 의견(義犬)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659-670.
- 김세영·박형인. (2017). 반려동물효과: 반려동물 소유와 심리적 건강 간 관계의 메타분석 연구. 「사회과학연구」, 28(1), 101-115.
- 김세영·박형인. (2018). 반려동물이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을 통해 행복에 미치는 효과: 마음챙김에 의해 조절된 매개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4), 1001-1018.
- 김진선·정지혜. (2018). 「노인 취약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매뉴얼 개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21). 「전국 638만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마리 키운다」. 동물보호법. (법률 제19486호).
- 농촌진흥청. (2023). 「사람과 동물과의 유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https://www.nias.go.kr/companion/new\\_petBoard.do?cmCode=M170718155506890](https://www.nias.go.kr/companion/new_petBoard.do?cmCode=M170718155506890).

- 모효정. (2015).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한 슬픔, 펫로스 (Pet Loss) 증후군의 증상과 대처. 「인간·환경·미래」, (15), 91-120.
- 문영희·김효정. (2011). 반려동물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455-477.
- 법무부. (2023). 민법. (법률 제19098호).
- 성한빛. (2021). 「재난 시 동물 안전 관리 및 동물복지에 관한 법적 연구 -미국의 재난 시 동물 안전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송영지·권혜민·류지선. (2020). 재난피해 노인의 삶의 질 수준과 영향요인 분석. 「한국웰니스학회지」, 15(1), 61-71.
- 송영지·최송식. (2020). 재난취약계층 노인의 재난 후 사회적응 영향 요인. 「인문사회 21」, 11(6), 1779-1790.
- 신상영·남현정·김상균. (2021). 「서울시 대피시설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 이경미·최태영·김옥진. (2022). 취약계층 고령반려인의 반려동물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 21」, 13(5), 1939-1954.
- 이국희. (2019). 사회적 배제, 반려동물 키우기,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탐색적 연구. 「감성과학」, 22(1), 3-14.
- 이용숙. (2017). 가족으로서의 반려동물의 의미와 반려동물로 인한 구별 짓기. 「한국문화인류학」, 50(2), 337-403.
- 이종화·손영은. (2022). 반려동물이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반려동물과 사회적 지지망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2(4), 159-172.
- 이진홍. (2021). 재난 및 재해 등에 따른 (반려) 동물의 구조 및 구호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49, 57-80.
- 일본 환경성. (2013). 「반려동물 재난 대책 가이드라인」. [https://www.env.go.jp/nature/dobutsu/aigo/2\\_data/pamph/h2506/ippan.pdf](https://www.env.go.jp/nature/dobutsu/aigo/2_data/pamph/h2506/ippan.pdf).
- 임동균. (2019). 재난발생시 재난약자 지원에 관한 연구-복지 대피소를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5), 587-602.
- 임현우·유지선. (2022). 「재난관리론: 이론과 실제」. 박영사 pp.303-327.
- 정지혜·표경수·김진선. (2019). 독거노인이 경험한 지진관련 스트레스와 중재자원: 포항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4(2), 35-60.
- 조명선. (2019). 자연재난 피해 노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발생 관련 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3(2), 214-227.
- 최경식. (2016). 「재난안전약자의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최준호·정설희·김겸훈, 권설아. (2023). CAUSE 모델을 적용한 일본의 재난발생 시 반려동물 보호대책 분석.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23(1), 51-59.
- 최형운. (2018).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위기관리연구논총」, 2, 57-78.

-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https://www.census.go.kr/cds2020/surv/RealSurvRslt.do?q\\_menu=1&q\\_sub=1](https://www.census.go.kr/cds2020/surv/RealSurvRslt.do?q_menu=1&q_sub=1).
- 통계청. (2021). 사회조사.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9&act=view&list\\_no=415115](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9&act=view&list_no=415115).
- 통계청. (2022). 고령자통계.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20896](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20896).
- 통계청. (2022). 장례가구 추계.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20600&bid=207&act=view&list\\_no=418919](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20600&bid=207&act=view&list_no=418919).
- 한아람. (2017). 성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 및 애착과 삶의 질과의 관계. *인문사회* 21, 8(6), 1093-1107.
- 행정안전부. (20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2010. 6. 8, 법률 제18685호).
- 행정안전부. (2010). 재해구호법. (개정 2010. 7. 23, 법률 제16881호).
- 행정안전부. (2021). 재난연감.
- 행정안전부. (2021). 재해연보.
- 행정안전부. (2022). 국민재난안전포털 우리집안전점검. 「애완(반려)동물대처방법」.
- 허보영·박상현. (2016). 재난상황에서의 대피시설 운영 개선 방안 연구.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6(5), 105-112.
- 황초희·김영주. (2022). 반려동물 친화적인 일본 노인요양시설 공간계획 특성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7(4), 253-265.
- KB금융지주 경영연구. (2021). 「2021년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https://www.kbfg.com/kbresearch/report/reportView.do?reportId=2000160>.
- KBS 뉴스, 개·고양이가 물건이라고요?...“제3의 지위를”, 2021.05.19
- 뉴스핌, 지진 발생하면 대피소 출입금지 반려동물, 어떻게 해야 하나, 2017.11.25.
- 부산일보, ‘생존 키트’ 미리 준비하고 ‘첸넬 훈련’은 필수...반려동물 재난 대처법, 2022.03.16
- 안전정보, [재난안전칼럼] 사람과 반려동물, 2023.05.29
- 연합뉴스, “허리케인 카트리나 악몽 10년...갈 길 먼 미 뉴올리언스” 2015.08.24
- 인사이트, “차라리 같이 죽을래”...반려동물 집사들 가슴 아프게 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 2023. 05.31
- 쿠키뉴스, 재난문자에 “우리 고양이는요?”... 서울 내 반려동물 대피시설 ‘0개’, 2023.06.03
- ASPCA. (2023). 「Disaster Preparedness」. <https://www.aspc.org/pet-care/general-pet-care/disaster-preparedness>.
- Edmonds, A. S., and Cutter, S. L. (2008). Planning for pet evacuations during disasters. *Journal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Management*, 5(1).
- Heath, S. E., Beck, A. M., Kass, P. H., and Glickman, L. T. (2001). Risk factors for pet evacuation failure after a slow-onset disaster. *Journal of 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18(12), 1905-1910.
- Hesterberg, U. W., Huertas, G., and Appleby, M. C. (2012). Perceptions of pet owners in urban

- Latin America on protection of their animals during disasters.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 NTAS. (2023). 「Prepare Your Pets for Disasters」. NTAS Ready.gov. <https://www.ready.gov/pets>.
- NYC. (2020). 「Ready New York」. NYC.gov:Korean, 2020 Edition. [https://www.nyc.gov/assets/em/downloads/pdf/pets\\_korean.pdf](https://www.nyc.gov/assets/em/downloads/pdf/pets_korean.pdf).
- Tanaka, A., Saeki, J., Hayama, S. I., and Kass, P. H. (2019). Effect of pets on human behavior and stress in disaster. *Frontiers in veterinary science*, 6, 113.

---

양수연(梁守延): 동의대학교에서 소방방재행정학과 재난관리학 석사과정 중에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재난 관리, 재난약자, 소방행정 등이다.(ssyeon98@naver.com)

이달별(李달별):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계획, 도시방재, 재난사회학, 공간분석 등이다.(moon@deu.ac.kr)

〈논문접수일: 2023. 7. 10 / 심사개시일: 2023. 7. 10 / 심사완료일: 2023. 8. 2〉



## Abstract

###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reducing disaster vulnerability in the Elderly through Pets

Yang, SuYeon

Lee, Dalby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oretically suggest the need for policy development to alleviate the psychological vulnerability of the elderly in case of a disaster, and to suggest practical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is,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the vulnerability of the elderly to disasters and the psychological impact of pets. In particular, in a disaster situation, it focuses on the case of having to use an evacuation shelter, which can be the most mentally and psychologically vulnerable. To this end, we first analyze prior research on the psychological comfort provided by pets in the field of psychology and theorize that allowing pets to accompany the elderly to shelters and other facilities can help alleviate their vulnerability. By examining and analyzing overseas laws and guidelines such as those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is study suggests specific measures to be introduced in domestic disaster-related laws and the Pet Disaster Response Act o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s National Disaster Safety Portal.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a theoretical basis for allowing pets to enter evacuation centers as a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to mitigate the vulnerability of the elderly during disasters. It is also important in that it provides a basis for practical law revision by suggesting specific applications of current laws and guidelines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Key Words: pets, elderly, psychological vulnerability, mitigation, companion evacuation